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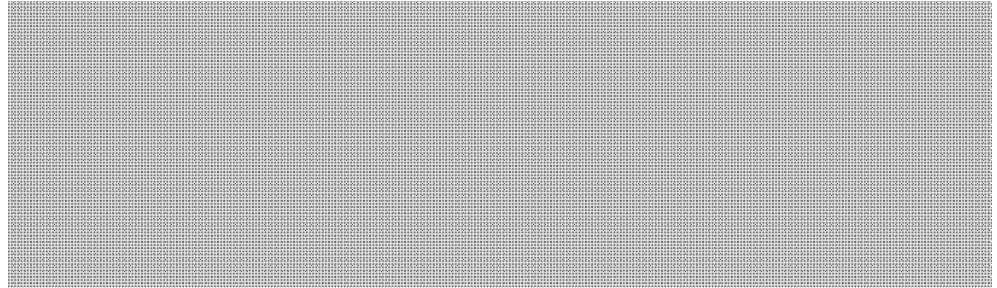


: 2018-07-25

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

사 건 2017고단4455 사기

피 고 인



검 사 이세종(기소), 김혜림, 오상연(공판)

변 호 인 변호사 [REDACTED], [REDACTED]

판 결 선 고 2018. 7. 4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[REDACTED]에서 컨설팅업체인 [REDACTED]를 운영하고 있다.

1. 피해자 [REDACTED]에 대한 사기

가. 2016. 1. 5. 범행



피고인은 2016. 1. 초순경 위 [redacted] 사무실에서, 렌탈 회사인 (주)[redacted]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 확보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'나에게 컨설팅을 받고 신용상에 문제가 없으면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5억 원 정도 정책금융자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.'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.

그러나 사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가 제출하는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기술개발능력, 생산능력, 경영이나 자금 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,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, 피고인이 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주는 등의 편의제공은 위 보증지원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, 달리 피고인에게 위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줄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증지원을 받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다.

결국 피고인은 2016. 1. 5.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(번호 : [redacted])를 통해 3,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.

나. 2016. 3. 29. 범행

피고인은 2016. 3. 26.경 위 [redacted] 사무실에서, 피해자에게 '원래는 (정책지원자금) 5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,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정책지원자금을 5억 원 더 받아서 총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.'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.

그러나 사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가 제출하는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기술개발능력, 생산능력, 경영이나 자금 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



고,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관련하여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여부는 위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토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금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줄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다.

결국 피고인은 2016. 3. 29.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해 위 명목으로 2,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.

2. 피해자 [REDACTED] 에 대한 사기

피고인은 2016. 2. 11.경 부산 부산진구 [REDACTED], A동 4507호 [REDACTED] [REDACTED]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배달 업체인 (주) [REDACTED] 사무실을 찾아가 후 피해자에게 '나는 컨설팅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. (주) [REDACTED] 과 관련하여 나에게 컨설팅을 받으면 수개월 내 기술보증기금 등에게 이야기하여 정책금융 자금을 받아주겠다.'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.

그러나 사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가 제출하는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기술개발능력, 생산능력, 경영이나 자금 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,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, 피고인이 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주는 등의 편의제공은 위 보증지원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, 달리 피고인에게 위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줄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증지원을 받도록 해줄



능력이 없었다.

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(번호 :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)를 통해 위 명목으로 3,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증인 ████████, ████████, ████████, ████████의 각 법정진술

1.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

1. ████████, ███████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
1. 사업계약서 컨설팅 계약서, 송금확인증, 어플개발계약서, 이체확인증

1. 컨설팅계약서, 입출금거래내역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각 형법 제347조 제1항, 각 징역형 선택

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양형의 이유

[권고형의 범위]

일반사기 > 제1유형(1억 원 미만) > 기본영역(6월 ~ 1년 6월)

[특별양형인자]

없음

[선고형의 결정]

편취 금액,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



.
.
: 2018-07-25

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판사 정영훈 _____